

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나20436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나20436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5636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3. 2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5636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 표 제5행 제5열의 “2018-09-06” 부분을 “2018-09-05”로, 제7행 제5열의 “2020-09-06” 부분을 “2019-09-06”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1)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와 이 사건 주식 7,000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은 4,500주에 불과하였는데[즉, 당초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에서 B이 4,000주를, B의 부친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2012. 8. 19.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J, K, B, L, M,

N이 위 3,000주를 각 500주씩 상속하였으며, 이로써 B이 보유하게 된 주식은 4,500주(= 4,000주 + 500주)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B이 망인의 주식을 전부 포함한 이 사건 주식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실제 보유 주식 수를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주주명부(상속후)], 을 제12호증의 1(상속에 의한 주주명부 정정신청서), 을 제12호증의 2(I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는, ① 위 서류들이 모두 E의 대표자인 피고나 피고 남편인 B의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무렵인 2023. 9.경에야 작성하고 구비한 것인데다, 그 내용도 망인 사후 1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 비로소 공동상속을 반영하여 E의 주주명부를 소급적으로 정정하고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여서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오히려 갑 제7호증(주주현황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내역상으로 B이 망인으로부터 3,000주 전부를 상속받아 2012년 기말시점에 이미 전체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왕정옥, 판사 박선준, 판사 진현민

별지

1)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